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05. 7. . (제 17 회)

제출일자	2005. 6. .
제 출 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2005. 4.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2004. 12. 20, 조례 제130호)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천방재담당”을 “복구지원담당”으로 개정코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위원장 및 간사지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
 -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천방재담당”을 “복구지원담당”으로 개정코자 함.

3.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2호중 “하천방재담당”을 “복구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5항중 “하천방재담당”을 “복구지원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u>건설과장</u> 2. 기금출납원 : <u>하천방재담당</u> ②(생략)	제9조 (회계공무원) ①----- ----- ----- 1.기금운용관 : <u>재난안전관리과장</u> 2. 기금출납원 : <u>복구지원담당</u> ②(현행과 같음)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과장</u> 이 된다. ④(생략).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u>하천방재담당</u> 이 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②(현행과 같음) ③-----, ----- <u>재난안전관리과장</u> 이 된다. ④(현행과 같음). ⑤----- -----, <u>복구지원담당</u> 이 된다.